

2025학년도 졸업임상역량 과정평가(종합임상실습 3) 시행지침

1. 목적

본 지침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**치의학과** 졸업예정자의 임상역량 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「졸업임상역량 과정평가」의 절차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, 졸업 직전 학생의 진료계획 수립 및 술기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2. 적용 대상

해당 학년도 **치의학과 졸업예정자 전원**

졸업생 중 실기시험 불합격자

3. 평가 시행 및 기준

평가 횟수: 연 1회 실시, 필요 시 추가 평가

평가 문항 구성: 총 3문항

- ① 진료문항
- ② 수기문항
- ③ 복합문항

배점 방식: 각 문항은 난이도에 따라 **백분위 환산점수**로 변환하여 평가함

4. 합격 기준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:

1차 및 2차 평가에서 각 문항별 총점이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

전체 문항(3문항) 점수가 합격선 미만인 경우

합격선 설정: 각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, **최소 임상수행 능력**을 갖춘 학생이 통과할 수 있는 점수로 평가위원회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

5. 운영 원칙

평가 결과는 **종합임상실습3 교과목 과정평가 성적**에 반영됨

평가 결과는 **개별 피드백**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며, 재시험 여부 및 보완지도에 반영됨

일정 및 시행 방식은 필요 시 **졸업준비실의 판단에 따라** 조정될 수 있음

6. 평가관리 및 시험 규정

본 과정평가는 「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시험 운영지침」을 준수하여 시행하며, 다음과 같은 수험자 규정을 적용한다.

[제6조] 시험자의 준수사항

- ① 시험자는 **시험시간 10분 전까지**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한다.
- ② 시험자는 **필기구 등 사전 고지된 준비물 외의 모든 물품**을 시험 시작 전 가방에 넣고 지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시험 중에는 학교가 지정한 시계를 제외한 **모든 전자기기(휴대폰, 전자사전 등)** 사용을 금지하며, 소지 시 **부정행위로 간주**한다.
- ④ 감독자에게 부정행위로 의심받은 경우, **1차 소명 기회**가 즉시 부여되며,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정

행위로 간주하여 즉시 퇴실 조치하고, 답안지에 감독자 날인 후 보관한다.

⑤ 부정행위로 퇴실한 자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가 참석한 **치과대학 운영회**에서 2차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,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“**유급**” 처분될 수 있다.